

01장 식품안전관리

1. 식품안전관리 주요 사항
2.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3. 식품안전관리 체계
4.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5. 식품제조가공업체 기계 기구류 등 안전관리
6. 식품 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7. 식품 등의 표시관리
8.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관리
9.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1 식품안전관리 주요 사항

1.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 (생산·유통 환경) 대내외 업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비

-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권고 조치
 - * 마약류 용어를 사용한 간판, 메뉴판, 제품 등에 대한 변경 권고 및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교체 비용 (간판·메뉴판) 지원 등 절차 안내
- 건강기능식품 GMP 우수영업소 선정 및 사후관리
 - * 정기 조사·평가 95% 이상 ➡ 차년도 자체 조사·평가(정기 조사·평가 대체)
- 유통단계 농·수산물의 부적합 발생 건 중 사례를 선정하여 관계 부처 합동 부적합 원인조사 실시 시범
- 온라인 플랫폼 등 판매 제품* 및 다소비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 * 전체 수거 건수 대비 온라인 수거 건수 ('24년) 5.6% ➡ ('25년) 10% 이상
 - ** ('24년) 15일 이내 ➡ ('25년) 부적합 이력 품목은 7일 이내 검사 완료

● (소비 환경)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관리 체계 개선

- 시기별 다소비 수산물*기획조사 등 안전성 조사 강화**
 - * 설 추석 명절 다소비 수산물, 제철 수산물(2월 홍게, 7월 민어, 9월 대하 등)
 - ** ('24년) 20,000건 ➡ ('25년) 22,000건(불필요한 검사항목은 조정하여 업무부담 개선)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조리식품의 노로바이러스 추가 검사* 및 지방청 주관 「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 운영 강화**
 - * ('24년)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 * ('24년) 자율 운영 ➡ ('25년) 연 2회 이상 운영
-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대상 확대
 - * (기존)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 (변경) 기존 +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2.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규제 개선 내용 반영

● 식품 등의 오염사고 보고절차* 신설(「식품위생법」, '25.1.3.시행)

* 오염사고 발생시 보고, 현장 조사 절차 등 마련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의 범위* 확대(「식품위생법 시행령」, '24.11.15.시행)

* (기존) 식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한정 ➡ (개선)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자가품질검사 기준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7.3., ㉡'25.1.1.시행)*

* ㉠ 자자가품질검사 면제(HACCP 정기평가 95%→ 90% 이상 시)
 ㉡ 자사제조용 수입 반가공 원료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

● 동일·유사 업종 영업시 신규 위생교육 면제 및 정기 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4.7.18.시행)

* (기존) 동일 시·군·구 ➡ (개정) 동일 시·도 내 영업시 면제

● 축산물·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기한(다음해 2월말)* 완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24.1.12.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5.30.시행

● 「식약처 처분송무 통합지침」('24.12.11.) 제정에 따른 현행화

· 개별 사안에 따른 위반행위 중 고발 제외 및 예외 기준 현행화

2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중앙정부는 최근 언론 동향·사회적 이슈 등 중요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제조업, 접객업 등 일상적인 점검 안전관리를 주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환

구분	~'23년	'24년~
점검계획 수립	모든 점검은 식약처	일상점검은 시·도
점검결과 확인	점검 시마다 시·도 취합	일상점검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확인 (그 외 점검은 현행 유지)

- 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HMR),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나.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
- 다. 탁·약주, 과실주, 맥주 등 시기별 주류제조업체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라. 온도(냉장·냉동) 관리 등 식품의 유통·운송 단계 관리 강화
- 마. 모든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형식적·관행적 지도·점검 탈피
- 바.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한 단속필요성이 높은 업체, 3년 미점검 업체 등에 안전관리도 병행 실시
 - * 단속 대상 선별 프로그램은 현재 시스템 보완 중으로, 완료 시 지침 반영 예정
- 사. 각 지자체별 지도·점검(수거·검사) 등은 지침에 따라 시기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1) 시기별, 지역별, 점검 빈도, 위반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하여 실시
- 2) 점검은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본안전수칙' 항목 위주로 점검하되,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점검

기본안전수칙 점검항목

①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③ 방충·방서시설 기준 ④ 제도가공실 위생적 관리 ⑤ 자가품질검사 ⑥ 이물 혼입 ⑦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 ⑧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⑨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⑩음식물 재사용

- 아. 지도·점검 시 업계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1~2주 이전에 점검대상, 시기, 품목, 방법 등을 인터넷, 문자, 일간지 등으로 사전에 알리는 등 사전예고제 실시
 - * 다만, 사전 예고시 특정 일자와 시간, 점검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금지되며,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특별점검 등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 가능

- 자. 지도·점검(수거·검사 포함) 결과는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당일 입력
 - * 특히,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점검자 종합의견을 "점검내용"에 반드시 등록하여 다음 점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필수 입력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차.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조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및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재점검 결과에도 위반한 업체는 특별관리업체로 지정·관리

☐ 재점검 관련

· (원칙) 위반 사항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즉시 시정, 현장 멸실 등 부득이 재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카. 위반된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인 경우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타.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중 계통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으로 업체 및 제품 정보 등을 신속히 통보
- 파.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식약처(본부)에서 언론보도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 요청 시 해당 지방식약청,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히 제출
- 하. 각 행정기관에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미리 통보
 - * 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4항

- 거. 위해 우려가 높은(Risk-Based) 품목 및 검사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
 - 1) 수거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지도·점검 일정보다 이전에 실시하여 결과 발표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2) 특정 시설, 품목 등 건수 위주의 일괄수거 금지
 - 3) 중복수거 방지를 위한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적극 활용하고 관내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우선으로 수거·검사 실시
- 너. 식품위생관련 담당공무원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출입·검사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통보
 - 1) 의심행위 등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
 - *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은 확보하되, 영업자 확인서 징구는 불필요
 - 2) 관련기관(부서)에 정보 사항으로 문서 통보 (증거물 포함)

구분		점검기관	집합 교육 프로그램	구분
유통단계	농산물*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축산물 포함
		시·도, 시·군·구(식품위생부서)	시·도, 시·군·구(원산지부서)	
	수산물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식품위생부서)	시·도, 시·군·구(원산지부서)	
수입단계	수입식품	지방식약청	통관 관할 세관	대외무역법 적용

- 더. 위반사항 중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병과 처분조치
 -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을 제외할 수 있다.
 - 1) 행정처분 양형이 시정명령, 시설개수,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 중 아래 <참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단, 위반행위의 사안이 중하거나 고의적인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 러. 기타사항
 - 1) 식품취급시설 점검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 관련복장 착용 후 지도·점검 실시
 - * 점검자는 점검 시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손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업체 측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
 - 2) 영업장에 대한 출입·수거·검사 시 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감시원증)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영업장 관계인에게 제시

<참고> 시정명령, 시설개수, 경고 행정처분 행위

소관법률	위반행위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이물이 혼입된 식품접객업(제7조4항)	시정명령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제9조4항)	시정명령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50% 미만으로 미 실시(제31조1항)	시정명령
	급수시설기준을 위반(제37조2항)	시설개수
수입식품법	운반, 보관, 진열,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제18조1항)	시정명령
	내용량의 부족량이 10% 미만(제20조2항)	시정명령
	인증, 보증, 추천 등의 내용을 광고(제29조)	시정명령
건강기능식품법	사례품, 경품 제공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10조1항)	시정명령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제20조1항)	시정명령
	기준 및 규격 위반 건기식품의 판매 등(제24조1항)	시정명령
	취소, 폐쇄 관련 게시물 또는 봉인 손상(제35조1항)	시정명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물이 혼입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제4조5항)	경고
	검사항목 50% 미만을 미검사(제12조4항)	경고
	불합격 축산물의 용도와 전환 기준을 위반(제18조)	경고
	급수시설기준을 위반(제21조1항)	시설개선
	변경허가, 신고 없이 시설 일부를 철거(제22조)	시설개선
식품표시광고법*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용도를 함께 표시하지 않은 경우(제4조3항)	시정명령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제4조3항)	시정명령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9조3항)	시정명령

* 고의성이 있는 위반 사항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성분의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예: 실제 함량보다 표시량이 1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3 식품안전관리 체계

1.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 기본방향

- 1)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마련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십 구축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여건, 지도·점검 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식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분담체계」를 구축·시행
- 3) 지역에서 소비되는 소규모제조업,接客업 등 일상적인 점검은 지방정부에서 전담, 전국 유통되는 제조업체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은 중앙정보가 전담 관리

나.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 1) 시·도 및 지방식약청은 「식품감시업무협약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은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 또는 감시·단속인력 상호 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 2)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에 대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각종 교육,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 추진

다. 식품안전관리 세부 기능별 역할분담 체계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1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기획·계통 조사 및 제도 개선 ·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운영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관내 주류제조업체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관리 · 관내 주류제조업체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계획 수립·시행	· 관내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운영	· 관내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식품등의 이물 관리	· 이물 보고·신고에 관한 법 제·개정 · 관련 제도 운영, 조사 관리 총괄	· 식품 이물 보고 접수 및 원인조사 실시	· 이물 보고·신고 접수에 대한 식약처 보고 · 식품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 이물 보고·신고 접수에 대한 식약처 보고 · 식품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3	식품 취급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스팀보일러, 식용유지 착유기, 고춧가루 등 분쇄기, 추출(종탕)기, 압축공기	-	· 지침에 따라 관내 업체 및 시설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관내 업체 및 시설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4	위해식품 회수·폐기 관리	· 위해식품의 회수·관리 총괄 · 운영지침 제·개정 ·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 운영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관리총괄	· 위해식품의 회수·폐기 관리 · 회수대상 업체 추적관리 및 계통추적 조사 (주류 포함)	· 관할 시·군·구 위해식품 회수·폐기 지원 · 회수실적 관리 ·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확대	· 회수명령 시행 · 회수대상 업체 현장조사 ·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 보고서 검토·관리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5	허위·과대 광고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사이트 - 홈쇼핑·중앙일간지등 · 인터넷사이트(해외) ·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개선 운영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방 TV 방송 -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 관내 총괄 관리 · 위반업소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 지역 케이블 방송 · 관내 식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위반업소 단속
6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 운영지침 제·개정 및 '부정·불량식품 총괄반' 운영	· 위해정보에 따른 지방 '부정·불량식품 총괄반' 운영	· 자체 부정불량식품기동 단속반 설치·운영	· 단속인력 등을 감안 선택적 운영
7	합동단속	· 종합 계획 수립 및 총괄	· 시·도 합동단속 지원·참여	·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단속참여
8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운영	· 운영지침 제·개정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9	식품위생관련 동업자조합 자율지도	· 운영지침 제·개정	· 동업자 조합(중앙)의 자율지도에 필요한 교육·홍보지원	· 동업자 조합(광역)의 자율지도에 필요한 교육·홍보지원	· 동업자 조합(기초)의 자율지도에 필요한 교육·홍보지원
10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총괄관리 · 운영지침 및 고시 제·개정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관리 · 민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 민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 민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11	식중독 관리	· 운영지침 제·개정 및 총괄관리 - 범정부 협의체운영 등 조정·관리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 식중독원인조사반 운영 - 지역간 원인조사 실시 및 추적조사·관리 · 원인조사 방법 지도 및 업무 조정 ·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식중독 교육·홍보 ·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등 관련 업체 지도·점검	·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식중독 원인조사반 운영 및 조사실시 · 식중독 교육·홍보

2.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관리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시스템 입력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하지 않도록 입력 철저

구분	시스템
시·군·구	새울행정시스템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약처(지방식약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4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지도·점검

1) 기본방향

- 가)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등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나)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등 단속 필요가 높은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 관리
- 다)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라)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 마)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위생등급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 HACCP 인증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출입·검사 주기 또는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
- 바) 소비기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냉장·냉동 보관창고, 원료·제품 운송차량 등 온도관리 강화

2) 관리방법

-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중점점검 실시

- i) 연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특별관리업소 등 위반이력 업체
- ii)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 iii)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소(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업소 우선선정)

- 나)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 케익류, 김치류, 즉석섭취식품 등
- 다) 출입·검사면제 업소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라) 식품을 환, 분말 등으로 제조하여 유사 건강식품 등으로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중점관리
- 마) 업소명 또는 제품명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용어 변경 권고
 - * 신규 영업 등록시 마약 용어 사용 업소명을 등록하지 않도록 안내
 - ** 마약 용어 사용 제품명을 신규로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 변경신고 및 생산이 없는 품목은 품목제조중단보고하도록 안내

3) 지도·점검 절차 및 요령

절차	요령
지도점검반 편성	지도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2인 1조 편성 원칙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의 경중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 및 직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감시인력 등 감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
증표제시	출입·검사 또는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식품위생감시원증 등)제시
출입·검사 목적 등 서류 제시	출입·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조사기간,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의 서류를 제시
확인(자인)서 징구	출입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영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자인)서를 징구 ※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입력
수거증 발급	검사를 목적으로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 반드시 수거증 발급 ※ 냉장·냉동제품 중 미생물 항목이 있는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운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영업자에게 서명을 받고 태블릿PC(현장행정 식품위생)를 이용하여 입력

4) 행정사항

- 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회수 대상인 경우 반드시 회수 조치하도록 영업자 교육·홍보 강화
- 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은 반드시 해당 로트의 동일제품을 수거검사 하고, 없는 경우 전·후 제품을 수거 검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등 필히 조치

5 식품제조가공업체 기계 기구류 등 안전관리

1. 목적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스팀(증기)보일러, 식용유지 착유기, 고춧가루 등 분쇄기, 추출기(중탕기), 압축공기, 기계·기구류의 윤활제에 대한 주기적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전성 도모

2. 적용 대상업소

- 1) 스팀(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떡, 만두 등 제조·판매 업소
- 2) 착유기를 이용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착유)·판매 업소

- 3) 분쇄기를 이용한 고춧가루 등 제조·판매 업소
- 4) 추출(중탕)기, 유압기 및 포장기 등을 이용한 추출가공식품, 추출식품, 액상 제품 제조·판매 업소
- 5)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식품을 생산·제조하는 기계·기구류에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 6)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의 회전체 등에 윤활유가 사용되어 식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3. 행정사항

시·군·구는 관련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계도

4. 기타사항

- 작업자 위생관리 규제 현실화
 - 완전 자동화 제조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와 공정 중인 식품이 배관 등으로 운송되어 외부 노출이 전혀 없는 구역의 작업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가능
 - 종사자가 없는 완전 자동화 제조시설 또는 외부 노출없이 배관 등을 이용한 제조 공정 등 이물 혼입·오염 우려가 없는 제조구역 종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위생모·마스크 의무 착용 제외

5. 주요 점검사항

대상	점검 사항
스팀(증기) 보일러	· 보일러 내부 물탱크 침전물 제거 등 관리여부 · 스팀(증기) 유도관 잔류수 배출 이행여부 · 보일러 주변 및 스팀유도관 등 청결유지 관리여부 · 보일러에 사용되는 청관제의 식품첨가물 해당 여부(스팀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제조공정에 한함) ※ '19년부터 청관제에 대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시행
식용유지 착유기	· 착유기, 볶음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1대의 착유기로 다른 종류의 유지 착유시 충분히 청소 후 착유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고춧가루 등 분쇄기	·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설치 여부 ·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행위여부 · 분쇄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압축공기	· 압축공기 여과 필터 주기적 교체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 여부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경우 분사 공기의 식중독균 검사 여부 · 주기적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식품 기계·기구류의 윤활제	· 식품용 기계·기구류에 식품용 윤활제의 사용 여부(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반 산업용 윤활제와 분리보관 여부 확인
지하수 관리	·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식품의 제조·가공·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여부 확인 ※ 검사 주기: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 6개월) ※ 검사 주기 기준: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판정일(판정일을 따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일)

1. 기본 방향

각 업종별 구비서류 및 인·허가시 확인 필요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등록·신고의 적정 관리 도모

구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가	-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록	식품(주류)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 공유주방 운영업
구분	시·군·구청	
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용기류제조업)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 허가·등록·신고 개념

-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 에서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짐
-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미군기지 내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규정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를 수 있음

아)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카)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샘플: 가래떡 제조방법 설명서

제품명(가래떡), 제품유형(떡류), 원재료목록(뽕쌀98%, 물, 소금 2%),제조공정(원료준비, 침지,탈수 및 분쇄, 증숙, 성형, 절단, 냉각,포장), 위생관리(손씻기,위생복착용, 제조설비는 매일 세척), 보관방법(0~5℃ 냉장보관), 소비기한 등

※ 폐업신고 관련 유의 및 협조요청 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
 - 위반사실 적발 기관에서는 행정처분 기관에 해당 위반 사실을 신속히 통보
 - 행정처분 기관에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영업자에게 신속히 발송
- 영업 승계 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속히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

1. 목적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식품(수입식품 포함),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추진방향

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나. 식품등 표시·광고 내용 및 진위여부에 대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3. 주요 표시제도

가. 소비기한 표시제도

1) 목적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국제기준 조화 및 탄소중립 실현

* 소비기한: 식품 등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2) 표시대상: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은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유형별로 제조년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3) 표시방법

· 소비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 표시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

* (예시)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

4) 제도시행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우유류(냉장보관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1. 목적

식품등*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 식품등: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 식품 등

2.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본 방향

가.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인터넷, 신문, 방송, SNS 등 광고 매체별, 부당한 표현 등 주제별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광고 관리 강화

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한 부당한 광고 행위 신속 조치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행정업무처리[공통] ➡ 1399신고센터, 광고모니터링 ➡ 모니터링정보망 에서 확인 및 등록 등 관리

다. 고의·상습 위반 업체 집중관리 및 현장 감시 강화

라.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마.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등 부당한 광고 업무 담당자간 소통·협력 강화

4. 단속 대상

가. 인터넷, SNS,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나.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민원신고 제품, 불법 유통 제품 등

다. 인플루언서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

9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1. 근거법령

- 1) 「식품위생법」제31조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의 2 및 [별표 12]
- 3)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검사기준

- 1)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제품)별 실시하되 검사항목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름
 - (식품) 식품유형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검사는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2) 검사의 주기는 검사대상 제품의 제조·가공일을 기준으로 함
 -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으로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을 기준으로 검사 실시하고 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산정
- 3) 검사면제 및 검사항목의 생략
 - (면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적용업소)에서 검사대상 식품유형의 조사·평가 결과 95% 이상인 경우
 - (검사항목 생략)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의 검사 생략 가능

3.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등

지방식약청, 시·군·구는 식품위생감시계획에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을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업종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가)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른 이행 여부
- 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재사용 여부
-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관할 기관 보고 여부
- 라) 연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별도관리
- 마) 회수·폐기 대상식품의 적정 처리 여부
- 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4. 자가품질검사 절차



참고: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 제1항 관련)

1. **빵류:**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다만, 크림(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다만, 크림(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에 한한다]
2. **떡류:** 대장균, 보존료
3. **식용유지류:** 참기름(벤조피렌), 들기름(벤조피렌,산화방지제)

*식혜는 대분류(음료류) 중분류(발효음료류), 세부식품유형에(기타발효음료)에 속하여 검사항목으로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가 있으며, 식혜는 엿기름(보리 맥아)을 이용해 전분을 당화시켜 만든 전통 음료로, 발효 과정을 거치므로 '기타 발효음료'에 해당합니다.